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00 발의연월일: 2024. 12. 4.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권성동

조은희 · 김기웅 · 이달희

이상회 • 권영진 • 서일준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축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 실현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기본권 실현에 기초적 전제가 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임.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자가 제한되는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균형 있 는 경제성장과 복지실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로 정부의 정책 방향 과 부합 하므로, 과세특례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한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 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 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 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 년 12월 31일-----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